「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7조(확인물품 및 확인사항) ① (생 략)	**제7조(확인물품및 확인사항)** ① (현행과 같음)	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한다.	② ---------- 생략할 수 있다.	○ 수출입자가 세관에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은 세관장이 요건면제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침 - 요건면제확인서 제출이 마치 세관장확인 생략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규정 정비
1. 「대외무역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(제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). 다만,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.	1. 「대외무역법 시행령」 제19조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. ----------	
가.~아. (생 략)	가.~아. (현행과 같음)	
자.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(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9 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)	자. ---------- 별표8의2 제2호 ----------	○ 타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
차.~파. (생 략)	차.~파. (현행과 같음)	
<신 설>	하. 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	○ 통합공고에 규정된 요건확인 면제의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	거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너. 「방위사업법」 더.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러. 「위생용품 관리법」	예외 법령 중 세관장 확인 고시에 누락된 일부 법령 반영
2. 「통합공고」 제12조(요건면제)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	2. (현행 제3호와 같음)	○ 기존 제3호를 제2호로 변경
3. (생 략)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
제7조의2(자율확인우수기업) ① (생 략)	**제7조의2(자율확인우수기업)**① (현행과 같음)	
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관세청장은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요건확인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	○ 문구 수정
③~④ (생 략)	③~④ (현행과 같음)	
제8조(지정요청) ① (생 략)	**제8조(지정요청)** ① (현행과 같음)	
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을 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에 관련법	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	○ 문구 수정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령·대상물품·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 및 요청사유 등을 기재하고 통관규제영향분석서 및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을 요청하려는 품목의 수가 10개(HSK 10단위를 기준으로 한다) 이하인 경우에는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	----------, ----------, ---------- ----------. <단서 삭제>	○ 요건대상 물품 품목분류 오류 방지를 위해 요건확인기관이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요청 시 품목분류 사전검토 생략기준(요청 품목수 10개 이하) 삭제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
④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요청사유·요청내용·물품의 특성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, 전산망 연계 및 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실시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확인대상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요건확인	④ ----------, ----------, ---------- ----------	○ 문구 수정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관세청장은 세관장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	
⑥ 관세청장은 통관단계에서 적발실적, 요건확인기관의 요건확인 운영 및 사후관리 실적, 통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요건확인기관과 협의하여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다.	⑥ ---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	○ 문구 수정
⑦~⑧ (생 략)	⑦~⑧ (현행과 같음)	
<신 설>	⑨ 요건확인기관이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.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요건확인기관과 협의하여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다. 1.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지정하고자하는 물품의	○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요청 시 해당물품의 소관법령이 통합공고에 미리 반영될 것 등 지정 절차상 요건확인기관의 준수사항 신설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	관계 법령이 통합공고에 반영될 것 2.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지정하고자하는 물품의 수출입 구비요건이 통합공고 수출입요령에 반영될 것 3. 통관단일창구 구축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산으로 수출입요건 확인이 가능할 것	
제10조(통관자료의요청 및 제공) ①~③ (생 략)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생략된 물품은 요건확인기관의 장의 신청이 없이도 통관이후 요건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관실적을 제공할 수 있다.	제10조(통관자료의요청 및 제공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-----제2호----------.	
제11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**제11조(재검토기한)** ----------2024년 7월 1일----------6월 30일----------.	○ 재검토기한 재설정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
<td><신 설>

【별표 1】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
가.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

<table>
<tr><th>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</th><th>구비요건</th></tr>
<tr><td>(7)「문화재보호법」 해당물품」</td><td>○ 문화재청장의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서 또는 비문화재확인서</td></tr>
<tr><td>(15)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해당물품
(가) (생 략)</td><td>○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신고 적합 통보서</td></tr>
</table>

나. 물품별 수출요건</td>
<td>부 칙 (2024. 0. 0. 관세청고시 제2024-00호)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제3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제4조(폐지규정)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"세관장확인물품(파충류) 수입요건 변경 지침"(수출입안전검사과-1243, 2024.5.10.)은 폐지한다.

【별표 1】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
가.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

<table>
<tr><th>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</th><th>구비요건</th></tr>
<tr><td>(7)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</td><td>○ 국가유산청장의 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서 또는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서</td></tr>
<tr><td>(15)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해당물품
(가) (현행과 같음)</td><td>○ ---------- 확인증</td></tr>
</table>

나. (현행과 같음)</td>
<td>○ 부칙 신설

○ 타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변경

○ 타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</td>
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
<td>(1) (생 략)
㉮ (생 략)
㉯ 문화재 또는 문화재일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문화재국외반출허가서 또는 비문화재확인서

【별표 2】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
가.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
<table>
<tr><th>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</th><th>구비요건</th></tr>
<tr><td>(18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
(다만,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)
(가) ~ (다) (생 략)
<신 설></td><td>(가) ~ (다) (생 략)
<신 설></td></tr>
<tr><td>(42)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해당물품
(가) (생 략)</td><td>○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입신고 적합 통보서</td></tr>
</table>
</td>
<td>(1) (현행과 같음)
㉮ (현행과 같음)
㉯ 문화유산 — 문화유산---------- ---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------ 국가유산청장- 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서 --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서

【별표 2】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
가.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
<table>
<tr><th>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</th><th>구비요건</th></tr>
<tr><td>(18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
(다만,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)
(가) ~ (다) (현행과 같음)
(라) 지정검역물(파충류)</td><td>○ (현행과 같음)
○ (현행과 같음)
○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야생동물 수입검역 증명서</td></tr>
<tr><td>(42)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해당물품
(가) (현행과 같음)</td><td>○ ---------- 확인증</td></tr>
</table>
</td>
<td>○ 타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, 법령명,서식 변경

○ 타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 신설
○ 타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</td>
</tr>
</table>